

[별표 2]

**옥상지수 산정방식**(제5조 관련)

< 옥상지수 >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sum_{\text{최상층}}^{\text{최하층}} \text{건물}(\text{층연면적} \times \text{층효용비} \times \text{용도비}) + \text{옥상}(\text{층효용비} \times \text{용도비} \times \text{사용허가면적})$$

**층효용비**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층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층 이상	35		
4층	40	42	80
3층	50	45	100
2층	60	60	100
1층	100	100	100
지하 1층	44	44	48
지하 2층 이상	38	40	

**용도비**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구 분	주용도 (교육시설, 주거 등)	부속용도 (기계실, 창고, 주차장)	옥 상
용도비	100	60	30